

##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본 코너는 국토해양부 등의 질의회신 사례를 발췌한 것이므로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전기·소방·통신감리 등 다른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감리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동 기준에 의한 총감리원수 산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서 규정한 책임감리·검측감리·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리며,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임. (건설관리팀-1049, 2006.5.24)

### [질의요지]

발주청이 책임감리용역을 먼저 발주 후, 동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이 나중에 공사발주를 한 경우 감리원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공사비의 정의는 무엇인지?

### [회신내용]

건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제1조제3항의 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하는 것임.  
(건관58825-237, 2000.3.10)

[질의요지]

감리업무수행지침서과 관련하여 지침서 제20조중 100억이상의 총공사비에 대한 감리업무보고서(CD-ROM) 제출에 대하여, 통합감리를 하고 있는 경우 총공사비 산정을 계약단위별 공사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계약단위별 공사금액으로 하는지? 만약 합한 금액으로 한다면 감리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 제출하는지, 계약단위별로 작성, 제출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CD-ROM작성관련 총공사비의 적용은 발주청의 계약단위별 공사금액을 기준하는 것이며, 여러공구로 분리된 경우에는 각 공구별로 작성하는 것임. (2003.1.3)

[질의요지]

각각 별도 발주된 책임감리용역(A, B)이 감리회사가 동일한 경우 2개의 감리비를 총괄하여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발주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2개의 책임감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감리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선정된 감리회사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를 통합하여 감리비를 조정할 수 없음. (건설안전과-2247, 2004.12.13)

[질의요지]

국경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가 감리대가 기준일 22일 미달 시 감리대가 정산 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47호) 제8조(감리원의 노임단가) 제3항에 “1개월 감리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개월 감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법정공휴일(국경일 포함)이 감리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실제 감리일수에 따른 감리대가 정산에 대하여는 감리용역 계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해당 발주청과 협의하시기 바람. (건설관리팀-514, 2006.3.10)

[질의요지]

2000억원 이상공사의 경우에도 감리대가기준 『별표1』의 2. 바. 2)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여야 하는지, 보정이 필요하다면 동 대가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평균감리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별표1』의 2. 바. 2)의 감리기간에 따른 감리원수 보정은 동 『별표1』의 1. 건설

공사 감리원수에 의하여 산출하는 공사(50~2000억원)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2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누승회귀식에 의하여 감리원수를 산출하므로 감리기간에 따른 보정은 필요하지 않음. (건설관리팀-396, 2005.10.27)

[질의요지]

같은 시.군에서는 경비절감을 이유로 기존 수행중인 하수처리장에 또 다른 장소에 순차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신설함에 있어서 기존 수행중인 감리회사가 감리용역 준공전 이라는 사유로 장소가 20~30km 떨어진 여러 건의 동종의 하수처리장을 계속하여 순차적이고 장기계획으로 별도의 공고 및 입찰 절차없이 발주청에서는 현장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였다는 사유로 통합감리로 수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3항에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수개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통합감리 시행여부는 당해 발주청에서 해당 공사의 특성, 현장여건, 착공시기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법 21조에서 정한 집행계획 공고(통합감리 대상공사 명기) 이전에 판단할 사항임. (2006.8.17)

[질의요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47호)에서 감리원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동 기준 제3조 4목)에는 법률수속비를 공사비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따라 법률수속비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 공사비 산정시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되며
- 이중 경비에는 각종 법정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복지공단 납부)
  - 고용보험료(고용보험법 : 고용보험관리공단 납부)
  - 공사손해보험(공사계약일반조건 10조 : 일반 손해보험사)
  - 국민건강보험료(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퇴직공제부금비(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1. 상기 비용이 감리원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갑설 : 상기 법정비용은 시공사가 관계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는 법정비용으로써 감리원이 비용 처리과정에서 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할 사항이 아니므로 감리비 산정시 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함
- 을설 : 상기 법정비용은 순공사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써 공사비에 포함되어야함

[회신내용]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47호) 제3조제4호에서 '공사비'라 함은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하고 있으며, 법률수속비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2200.04-105-9) 제18조의 '기타 법정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료 등은 법률수속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공사비에 포함됨. (2006.5.15)

[질의요지]

경기도 안산시 000건설공사 감리용역을 함에 있어  
가. 감리원이 관급자재에 대한 검수 및 감리를 하여야 하는지?  
나. 추가공사에 대한 감리 책임 여부 및 추가공사 감리시 감리용역비 추가 지급 요청 가능 여부?

[회신내용]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주요 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으며
- 2. 추가공사에 대한 감리수행 여부 및 추가공사에 대한 감리비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당초 계약내용 등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감리자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건관58825-525, 2001.7.9)

[질의요지]

관공사를 수행하는 책임감리 건설현장입니다. 감리단과의 계약주체는 발주처입니다. 본 현장에서 시공사 공사 진행 중 국경일, 휴일 및 감리원 근무시간(09시~18시)외의 공사수행중에 발생하는 감리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 수당지급의무가 발주처와 시공사 중 어느 곳에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와 관련하여 제정된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99호) 제5조 제3항 3호에 "상주감리원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감리용역계약 주체인 발주청과 협의하시기 바람. (2006.7.15)

[질의요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감리용역을 아래와 같은 산출근거로 계약되어 수행중에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에 변경 감리비의 산정 방법은?  
- 당초 감리비 = 공사비 × 해당요율 × 50%(발주처 사정으로 50%만 적용)  
<계산방법 1>

- 변경 감리비 = [당초공사비 + 증액공사비] × 당초요율 × 50% × 낙찰율  
<계산방법 2>
- 변경 감리비 = [당초공사비 × 당초요율 × 50% × 낙찰율] × [증액공사비 × 해당요율 × 낙찰율]

[회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법2조 5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발주청이 법 제27조와 제27조의2에서 정한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감리용역은 시행령 제50조 2항 2호에 책임감리대상공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질의하신 내용은 계약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용역의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시어 해당 발주청에 질의하시기 바람.(2006.5.14)

[질의요지]

공사현장에 고급감리원이 특급으로 승급을 위해 감리 승급교육(1주간 전문교육)을 받았을 때 해당 감리원은 고급감리원이므로 특급으로의 승급은 감리계약내용과 무관하다하여 감리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내용]

감리원의 교육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27조의2에 의한 책임, 시공, 검측감리용역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47호) 제6조 제2항에 "발주청은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2006.3.24)

[질의요지]

발주처의 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사유로 인해 휴일근무를 요청할 경우, 발주처에서는 휴일근무에 대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데 이런 경우 원인제공자인 시공회사에서 감리대가를 지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99호)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제3항제3호에 "상주감리원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은 해당 발주청과의 용역계약조건에 따라야 할 사항임.(2006.8.7)

